2021학년도
고숙련 일학습병행(P-TECH) 계약학과
참여기업 모집안내

(22212)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공업전문대학
TEL:(032)870-2741~4
http://www.inhatc.ac.kr

목 차

[고숙련 일학습병행(P-TECH) 계약학과 안내]

[고숙련 일학습병행(P-TECH) 계약학과 참여기업 모집안내]

1.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·····1
2. 전형일정 ·····1
3. 참여자격 ·····1
4. 선발방법 ·····2
5. 제출서류 ·····2
6. 공적 증빙서류 발급방법 ·····3
7. 산업체 참여 제한요건 ·····3
8.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방법 ·····4
9. 주의사항 ·····4
10. 문의사항 연락처 ·····4

[서식 1] 일학습병행 참여동의서
[서식 2] 일학습병행 참여신청서
[서식 3] 일학습병행 직무추가 및 변경 신청서
[서식 4] 일학습병행 사업수행계획서
[서식 5] 일학습병행 기업 체크리스트
[서식 6] 참여제한요건에 대한 기업확인 및 동의서
[서식 7] 일학습병행 훈련실시 확약서
[서식 8] 일학습병행 훈련실시(예정) 확약서
[서식 9] 계약학과 입학추천서
[서식 10]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
[서식 11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동의서

[고숙련 일학습병행[P-TECH] 계약학과 안내]

○ 일학습병행 개요

-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,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, 그 결과에 따라 **자격** 또는 **학력**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제도

○ 고숙련 일학습병행[P-TECH] 계약학과

[P-TECH]

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대상 신기술 중심 훈련과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後 학습 과정

[계약학과]

일학습병행을 통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·운영하는 학과

[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근거]

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계약학과 설치·운영규정」(교육부 고시 제2018-160호)

「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69호)

○ 고숙련 일학습병행[P-TECH] 계약학과 장점

- **학비부담 없이 기업과 대학을 오가며 현장실무와 교과 학습을 통한 전문학사 취득**
  - ■ 주중(월~금요일)에는 기업에서 OJT(도제식현장교육훈련)를 통해 현장실무 이수
  - ■ 주말(토요일)에는 대학에서 OFF-JT(현장외교육훈련)를 통해 교양 및 전공교과 이수
- 졸업 후 중간관리자, 기업현장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학습기업에게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○ 등록금 지원

구 분	국고지원금 (고용노동부)	교내장학금	본인 부담
고숙련 일학습병행 [P-TECH] 계약학과 등록금	71.6%	28.4%	0%

[고숙련 일학습병행[P-TECH] 참여기업 모집안내]

1.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

구 분	모 집 학 과	수 업 연 한	주/야	모 집 인 원
고숙련 일학습병행 [P-TECH] 계약학과	스마트기계설계과	2년	주간	35
	첨단스마트자동차과	2년	주간	30
합계				65

2. 전형일정

구 분	일 시	비 고
신청 및 1차 서류제출	2020.08.18 ~ 2020.11.30	접수기간 내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제출 -스마트기계설계과 leeeunb12@inhatc.ac.kr -첨단스마트자동차과 jswim@inhatc.ac.kr
서류심사 및 현장실사	2020.08.18 ~ 2020.11.30	기업소재지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
참여기업 확정 및 약정체결	2020.08.18 ~ 2020.11.30. (현장실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	기업소재지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
2차 서류제출	2020.11.23 ~ 2020.12.14	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및 제출 (우리 대학 본관 5층 공동훈련센터)
산업체 계약체결	2020.11.23 ~ 2020.12.14	계약체결기간 내 방문접수 및 제출 (우리 대학 본관 5층 공동훈련센터)
합격자 발표	2020.12.26.(토) 오후 4시 예정	대학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안내
추가모집	2020.12.26. ~ 충원시 까지	1차 합격자가 모집인원에 미달일 경우에 실시
추가모집 합격자 발표	2020.12.26. ~ 충원시 까지	상시 발표

3. 참여자격

구분	참여자격
산업체	**○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중인 기업(또는 P-TECH과 동시에 도제학교에 참여할 기업)** **○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** **○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기업** **○ 참여학과 해당 직종의 인적·물적 자원 및 능력을 갖춘 기업** **○ 참여학과 해당 직종의 기업현장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** **○ 그 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는 기업**
학생	○ 우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-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- 4대 사회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 가입되어 있는 자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자 ○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○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 훈련과정을 수료(예정)자

4. 선발방법

○ 1차 서류제출 →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→ 참여기업 확정 및 약정체결 → 추가 서류제출 → 지원자 서류제출 → 지원자 면접(모집인원 초과시) → 최종 참여(합격자) 발표

5. 제출서류

구분	제 출 서 류	부수	비고
신청	**일학습병행 참여동의서**	**1부**	**서식1**
1차 제출서류	① 일학습병행 참여신청서	1부	서식2
	② 일학습병행 직무추가 및 변경신청서	1부	서식3
	③ 일학습병행 사업수행계획서	1부	서식4
	④ 일학습병행 기업 체크리스트	1부	서식5
	⑤ 참여제한요건에 대한 기업 확인 및 동의서	1부	서식6
	⑥ 훈련실시 확약서 (도제 참여 기업)	1부	서식7 (해당기업)
	⑦ 훈련실시(**예정**) 확약서 (도제 **미참여** 기업)	1부	서식8 (해당기업)
	⑧ 신용평가보고서	1부	재무제표로 대체 가능
	⑨ **전담인력 재직증명서 (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)**	**각1부**	**※기업현장교사 자격이 있는 인원 모두**
	⑩ **전담인력 4대 사회보험가입 확인서 (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)**	**각1부**	**※기업현장교사 자격이 있는 인원 모두**
	⑪ **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증 (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)**	**각1부**	**※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은 기업별 1명 이상**
	⑫ 조직도	1부	
2차 제출서류 (개별통보)	① 계약학과 **입학 추천서**	1부	서식9
	② 계약학과 **설치 · 운영 계약서**	2부	서식10
	③ **사업자등록증명**	1부	
	④ **국민 건강보험 사업장(단위사업장) 적용통보서(확인서)**	1부	
	⑤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동의서 (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용)**	1부	서식11

※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미비 시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함

※ 1차 서류 제출 후 개별통보 받은 산업체만 2차 서류 제출

※ 산업체 대표의 직인은 재직증명서, 계약서, 추천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 모두 동일해야 함

※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※ 기업현장교사는 4명이상 지정해야 함

6. 공적 증빙서류 발급방법

증빙서류	발급기관	홈페이지	ARS
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	www.4insure.or.kr	-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	국민건강보험공단	www.nhic.or.kr	1577-1000
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	국민연금공단	www.nps.or.kr	1355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	고용보험	www.ei.go.kr	1350
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	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	total.kcomwel.or.k	1588-0075
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증	한국기술대학교 능력개발원	http://hrdi.koreatech.ac.kr	041-521-8011
사업자등록증명 등	국세청	www.hometax.go.kr	-

7. 산업체 참여제한 요건

*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 제5조(학습기업의 지정 등) 제2항 등

○ 기본 요건을 갖췄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참여불가

순	세부내용
1	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
2	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3	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4조 및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」 제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
4	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(단,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,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)
5	참여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6	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
7	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제69조(근로시간)*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(단,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,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)

8.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방법

구분	방 법
서류심사	○ **1차 제출서류로 서류 심사표에 따라 적합/부적합 여부 판정** - 인력양성 목표의 적정성(훈련직무, 훈련기간, 훈련준비중) - CEO의 의지(임금, 근로시간, 훈련실시, 교육연수) - 기업여건의 적절성 (임금체불, 산재다발, 행정처분, 상시근로자 수)
현장실사	○ 서류심사 적합 업체 대상으로 실제 훈련실시 예정 장소에서 적정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 실시 - 기업현황, 운영계획, 훈련시설/장비 등 종합점검 - 기업현장교사 후보군 보유 - 물적인프라 현황

9. 주의사항

◦「일학습병행법」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 의무(제24조) 및 위반시 불이익(제42조)에 따라 사업주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로부터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’ 하여야 함

◦ 참여기업 선정 후에도 「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」 제5조제2항 ·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간 중인 기업,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,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,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송치된 사업장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.

10. 문의사항 연락처

구분	담당부서 및 학과	연락처
원서접수, 서류제출 등	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	(032)870-2741,4
수강신청, 수업운영 등	스마트기계설계과	(032)870-2742
	첨단스마트자동차과	(032)870-2743

[서식 1]

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 2021년 P-TECH 참여 동의서

기업 현황	기업명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	
	주소지		(우)		
	대 표 자	직 위		성 명	
	실 무 담당자	직 위		성 명	
		전 화		휴대전화	
		전자우편			
	주요업종	※ 대표 업종 기재			

	순번	성명	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과정		P-TECH 훈련과정(예정)	학습근로자 서명
			고교명	도제훈련과정		
추천 학습근로자 현황	계					-
	1					
	2					
	3					
	4					

※P-TECH 훈련과정 : ①[P-TECH]구조해석설계_L4 ②[P-TECH]자동차차체도장_L3

상기와 같이 (1)순위로 귀 대학과 2021년도 P-TECH 훈련과정에 참여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월 일

대 표 자 (직인)

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귀하

[서식 2]

일학습병행 참여신청서

신청유형	재직자 ☐ 단독기업형 ■ 공동훈련센터형				
	재학생 ☐ 도제학교 ☐ 유니테크 ☐ IPP형 ☐ 전문대 재학생				
	(공동훈련센터명 : 인하공업전문대학)		(추천기관명 :)		
정부부처 사업유무	☐ 청년내일채움공제 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☐ 기타( ) ※ 해당신청서 첨부,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중복지원 불가				
기 업 명				대표자명	
기업유형	☐ 개인 ☐ 법인	고용보험관리번호		사업자등록번호	
업 종	주업종(주된 사업) : 기타업종 :				
	주요생산품(주요서비스) :		희망 훈련분야		
훈련직무			훈련과정 개발방식		
담당자명			담당자 직위		
전화번호	☎ : HP :		이 메 일		
팩스번호			홈페이지		
주 소					
훈련실시장소	*(주소와 동일할 시 공란)*				
상시근로자수		신용등급	증빙불가의 경우 '없음' 기재	기업유형	☐ 일반 ☐ 숙련기업 ☐ Best HRD기업 ☐ 강소기업 ☐ 혁신기업 ☐ 월드클래스300

안내사항을 확인했으며, 위와 같이 2021년도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명 **대표성명** **(인)**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필수 첨부서류: 사업수행계획서, 자체진단 체크리스트, 참여제한요건 확인 및 동의서, 훈련실시 확약서(추후 제출), 신용평가보고서(증빙불가 경우 생략), 기업유형 증빙서류(해당기업), 사업참여 적합기업(추천기관: 전문지원센터) 추천서<해당기업>, 협약서(공동훈련센터)

※ 일학습병행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일체의 금품,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
[서식 3] 일학습병행 직무 추가 및 변경 신청서

<table>
<tr><th colspan="6">기 업 현 황</th></tr>
<tr><td>기 업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대표자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사업자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사업장관리번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담당자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담당자 직위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전화번호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☎ :
HP :
FAX :</td><td>이 메 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홈페이지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h colspan="6">세부 신청현황(해당항목만 기재)</th></tr>
<tr><td>신청유형</td><td colspan="5">☐ 직무추가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추가
직무명</td><td>사업명</td><td>자격명
(모듈형은 과정명)</td><td rowspan="5">기존
운영과정</td><td>사업명</td><td>자격명
(모듈형은 과정명)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신청유형</td><td colspan="5">☐ 직무변경 (☐ 자격명 변경 / ☐ 자격수준 변경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변경내역</td><td>당초</td><td>변경</td><td rowspan="2">변경사유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※ 훈련직무 및 수준 변경 사유는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요망

[별첨] 직무 추가 및 변경 세부현황

위와 같이 훈련과정 개발 직무 추가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20○○년 월 일

신청기업명 **(직인)**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직무추가 및 변경 세부현황

기업명						자격명				
NCS능력단위명 (코드번호)	기준 시간	진행기관 (기업자체,외부위탁, 공동훈련센터)	시설			주요장비 현황				비고
			주소지 및 시설명	면적	1인당 면적	구분 (주장비, 보조장비)	단위	수량	장비모델명 (규격/사양)	

< 작성방법 >
- NCS능력단위명: 신규로 실시할 자격의 필수능력단위만 작성
- 시설: 해당능력단위 실시장소의 주소지 및 면적 등 기재
- 주요장비: 해당능력단위 실시를 위한 주요장비의 장비명 및 수량 등 기재

[서식 4]

사업수행계획서

○ 회사 소개

○ 연혁 및 일반현황 :

○ 주요 생산품 및 제품 :

○ 업종 :

○ 조직도(종합) * 조직도나 조직 현황을 간략히 기재하고, 교육훈련 전담부서 표시

[조직도]

Ⅰ. 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

1. 훈련과정의 적절성

가. 훈련과정

■ 산업형(구. NCS기반자격형) / □ 기업형(구. 모듈형) (■ 대학연계형 선택 여부)

* 대학연계형의 경우 산업형만 인정하며, 재직자 공동훈련센터가 대학일 경우에만 가능
* 산업형: 해당자격 필수능력단위 전체 활용(재학생은 반드시 해당유형으로 신청)
* 기업형: 전체 훈련시간 중 NCS 50%이상 활용
* 산업형 신청 후 기업형 과정으로 전환 불가

나. 훈련직무 분야(훈련대상자 채용직무 분야) 기재(자격명 또는 NCS 세분류)

---

* (예시) (산업형) 프레스금형제작사_L3, (기업형) 특수용접
*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
*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

다. 훈련실시 기간 ( ) 개월

※ 과정 및 자격 수준별 최소훈련시간
- 산업형과정: L2 400시간, L3 600시간, L4~5 800시간, L6 1,200시간
- 기업형과정: 600시간

※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: 1~2년(대학연계형은 최대 4년)

* 모집·채용 단계에서의 학습근로자 학력수준(학습근로자 요구수준)과 일학습병행 이수 후 학습근로자 목표 수준(훈련수준)에 따라 최소훈련기간 결정

* 기업지정 후 훈련과정 개발 과정에서 훈련 직무의 특성상 훈련기간의 확대·조정이 필요한 경우 동의함.

라. 현장외훈련(Off-JT)과 현장훈련(OJT) 구성 비율

<현장외훈련 시간(50 %) : 현장훈련 시간(50 %)>

* 산업형과정 : 현장외교육훈련(Off-JT)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5이상이고 100분의 75 이하일 것
* 기업형과정 : 도제식현장교육훈련(OJT) 시간은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이고 100분의 80이하일 것
* 현장외훈련은 이론교육 및 이론 관련 실험실습 등 포함

마. 모집·채용 학습근로자의 학력수준

□ 재학생(□고교/□전문대/□대학) (학년)

□ 졸업생(□고교/□전문대/□대학)

□ 기타( )

바. 모집·채용 학습근로자의 전공 요구 수준

□ 관련분야 전공자 □ 비전공자 □ 무관

2.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수

가. 총 1 명(기채용자 명, 신규채용 예정 1 명)

*인하공업전문대학 P-TECH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 수

Ⅱ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

1. 일학습병행 이해도 및 참여 의지

가. 일학습병행 수행계획

① 전담자(기업현장교사·HRD담당자) 선발 및 관리

② 학습근로자 선발 및 관리

③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·방안

④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

나. 그동안 정부지원 유사 교육훈련 사업* 참여 여부

□사업주훈련 □채용예정자 훈련 □학습조직화훈련 □체계적 현장훈련

□컨소시엄 훈련 □NCS기업개발컨설팅 □일학습병행 타 유형

□중소기업 청년인턴제(기간:) □기타 ( )

* 단순 임금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안됨

다. 기업현장교사 연수*는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(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), HRD 담당자 연수는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동의 여부(확약서 제출)

* 기업현장교사: 3박4일(필수통합과정), HRD담당자: 1일

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
라. 공단 지부·지사로부터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(토, 일, 공휴일 제외)이내 훈련실시를 안내 받았으며 이러한 훈련실시 의무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(확약서 제출)

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
2. 학습근로자 대우

가. 기업 내규 등에 따른 훈련(예정)직무 신규직원 급여 수준
: ( )원/월

* 급여수준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 (매년 최저임금 변경 반영)

<2021년 법정 최저임금>

△ 시간당: 8,720원
△ 월단위: 1,822,480원 (8,720원 x 209시간)
※ 209시간 = {(주당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/7x365일}/12개월

나. OJT 시간 포함 학습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: ( ) 시간

* 주당 근로시간은 통상 40시간 이하, 미성년자는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(확약서 제출)

다.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이수 학습근로자 대우(일반근로자 대비)(확약서 제출)

□ 우대(우대계획 :) □ 동등대우

* 학습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

연봉 1년차 ( )원 , 2년차 ( )원, 3년차( )원

Ⅲ. 기업 여건의 적절성

1. 신용등급 및 기업규모

가. 신용등급 :

* 신용등급증빙 불가의 경우 '없음'으로 작성(현장실사시 재무제표 심사로 대체)

*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관련 증빙서 제출

나. 매출액(백만원) :

전전년도	전년도	가장 최근년도

다. 상시근로자 수 : 총 명

* 단독기업형 기업(50명 이상), 공동훈련센터형 기업(20명 이상)

<예외>
① 월드클래스300, 명장기업, BestHRD기업, 강소기업,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, 발전가능성,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
②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,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(일학습병행 특화업종(특구) 지원센터)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

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 기재

2. 기업의 근로조건 ※ 특허는 증빙자료 첨부

가. 장기근속자 비율 : 전체 상시근로자 중 고용보험 취득일 3년 이상 경과한 근로자 비중

□ 70% 이상 □ 50% 이상 70% 미만 □ 40% 이상 50% 미만

□ 30% 이상 40% 미만 □ 30% 미만

* 계산식 : (고용보험 취득일 3년 이상 경과자 수/전체 상시근로자 수)*100

* 기업 설립기간이 5년 미만일 시에는 다음 계산식 사용 :
(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기업 운영기간의 50%이상을 근무한 자 수/전체 상시근로자 수)*100

3. 독자적 기술력 보유 (복수기재 가능) ※ 증빙자료 첨부

□ 특허 ( )건 (기술분야) □ 실용신안 ( )건 (분야)

□ ISO 인증( )

□ 정부지정 우수기술력 보유 기업 인정 ((년도))

* 강소기업, INNOBIZ, World Class 300 등 기업인정 현황 기재

Ⅳ. 훈련준비 상황

1. 기업현장교사 후보군 보유 ※ <기업현장교사 요건> 참조하여 체크

1) 인원 : ( )명

2) 자격

- 연구경력 : 기관명( ), 기간( )년
-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( )명

- 자 격 증 : □기능사 ( )명 □산업기사 ( )명 □기사 ( )명
  □기능장 ( )명 □기술사 ( )명 □기타( )
- 동일분야 현장 경력 3년 이상 ( )명

<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>

①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
② 「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·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
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
④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
⑤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

2. 물적 인프라 현황

1) 훈련시설: □ 강의실 □ 실험실습실 □ 기타 ( )

2) 훈련장비: 생산장비 외 별도 훈련장비 보유 (□ 예 / □ 아니오)

Ⅴ. 기 타

사업 참여경로(사업 정보 취득 경로) :

---

*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명 작성(기업발굴 전담지원기관 등을 통해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추천경로 반드시 작성)

Ⅵ. 안내사항(필독)

행정처분 통지 의무고지	■ 일학습병행에서는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을 적용(준용)하여, 일학습병행을 포함한 동 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행정처분 효력기간 중에는 일학습병행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. ■ 아울러, 일학습병행 참여 중인 기업이 중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, 행정처분의 범위에 따라 진행 중인 일학습병행 훈련 중단 또는 추가 훈련실시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. ■ 따라서,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(일학습병행관련 행정처분 포함), 또는 고용노동부 공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, 산재다발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,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한 참여제한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■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.
노동관계법 위반 금지	■ 본 사업에서는 학습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통한 기업-근로자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, 임금체불 또는 산재발생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강력하게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■ 따라서, 신청기업께서는 신청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노동관계법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■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있어 현재 처분 중임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실 수 없으며, 지정 이후라도 해당사실 발각되었을시 즉시 지정무효 및 지정취소 절차를 이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각종 고용지원사업과 중복 의무고지	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①시간선택제 일자리, ②일자리 함께하기, ③고용촉진 지원금, ④청년인턴제, ⑤취업성공패키지(근로자 지원), ⑥고용안정사업(사업주지원), ⑦청년내일채움공제, ⑧기타 고용지원 사업과 일학습병행을 중복 참여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따른 제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■ 따라서 ①~⑧의 고용지원사업과 일학습병행을 중복 참여시 즉시 관할 지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의 귀책사유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.
사업수행계획서 허위작성 · 제출 금지	■ 「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」 제5조 3항 및 「일학습병행 운영규칙」 제4조 2항, 본 공고문 내용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 작성하여 학습기업 지정받았을 경우 지정 취소 또는 훈련실시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현장방문 반드시 협조	■ 현장실사, 훈련모니터링 등 공단이 업무상으로 훈련실시장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훈련실시장소에 입장 가능해야 하며, 기업 보안문제 등 이유 불문하고 공단이 훈련장소 방문불가능할 경우 훈련실시중단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프랜차이즈 및 복수 사업장 훈련과정 개발시 유의사항	■ 프랜차이즈 사업장 또는 한 기업에서 복수 사업장이 학습기업 지정받아 동일 직무로 훈련과정을 개발할 경우, 훈련과정 복제 개발 방지 및 국가예산 절감을 위하여 훈련과정 개발은 대표 사업장 한 곳만 하게 되며, 타 사업장은 대표 사업장을 통해 개발된 대표 훈련과정을 활용해야 합니다. ■ ‘단독기업형’으로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은 프랜차이즈 본사 기준으로 대표 훈련과정(직무) 3개까지 개발 지원이 됩니다. 대표 훈련과정은 해당 프랜차이즈의 모든 가맹점에서 활용 가능합니다. ■ ‘공동훈련센터형’으로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은 공동훈련센터 훈련여건에 따라 훈련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공동훈련센터별로 대표 훈련과정(직무) 3개까지 개발 지원이 됩니다 ※본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외에 모체사업장을 별도로 둔 직영점, 공장 등에서 같은 생산·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의미합니다.

[서식 5]

일학습병행 기업 체크리스트

□ (작성요령) 본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이 귀사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, 각 항목별로 귀 사의 현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	답변
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의지	일학습병행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	일학습병행 참여에 대한 CEO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의지는 충분하다.	예 / 아니오
훈련과정	NCS(국가직무능력표준)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과 활용방법을 알고 있다.	예 / 아니오
	기업의 자체 교육훈련계획 또는 직무별 교육훈련과정(현장교재 등)을 보유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	현장훈련에 필요한 이론교육을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	우리 기업의 주요 직무와 관련된 NCS직종 또는 NCS기반 자격종목을 알고 있다.	예 / 아니오 직종 또는 자격종목명: ( )
학습근로자 채용 및 지원	'학습근로자'의 권리의무, '학습근로계약'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.	예 / 아니오
	학습근로자(훈련대상자)에 대한 구체적 채용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.	예 / 아니오
	학습근로자의 학습권(학습시간)과 근로조건(임금 등)을 보장하고 훈련일정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계획이다.	예 / 아니오
	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고충사항 해소 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.	예 / 아니오
기업현장교사 등 확보	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업현장교사를 확보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	학습관리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시설 및 기자재	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.	예 / 아니오

20 년 월 일

신청기업명 대표 성명 (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[서식 6]

참여 제한요건에 대한 기업확인 및 동의서

※ 참여신청 기업은 아래 내용을 **반드시** 사실대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세부내용	해당	비해당
임금체불 사업장	고용노동부 발표 **「체불사업주 명단조회」**에 등록된 사업장		
	최근 **3년간 2회 이상**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(단,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,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)		
산재발생 사업장	고용노동부 발표 **「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사업장 명단」**에 포함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		
	참여신청일 이전 **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**한 사업장		
사회적 물의 사업장	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**사회적 물의**를 야기한 사업장		
근로기준 위반 사업장	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제69조(근로시간) 위반*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(단,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,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* 미성년자 근무시간제한(1일 7시간, 1주 35시간) 관련		

※ [해당], [비해당] 란에 해당되는 항목 내용을 체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사업장은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, 이를 증명하기 위해 **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·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제공**함을 동의합니다.

또한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「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」 제5조(학습기업의 지정 등)제3항에 근거하여 **미지정 및 지정 후에도 지정취소** 될 수 있으며, 훈련과정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**개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**할 수 있습니다.

※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받은 경우 학습기업의 지정취소 가능

※ 훈련실시 중 위 사항 발생시에도 추가훈련실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 년 월 일

기업명 및 대표자 (인)

[서식 7]

훈련실시 확약서_현장실사 시 공단직원에게 제출

훈련실시 확약서

▢ 확약 사항

기업명	관할 지부·지사	현장실사일	훈련실시예정일
	인천지역본부	’20. . .	20. . .

※ 훈련실시 예정일은 현장실사일(공모결과 발표일)로부터 3개월 이내 일자 기재

○ 기업은 학습기업 지정 후 아래 사항 준수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, 상기 일정 및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▢ 훈련과정 개발신청 전일까지(재학생단계 등은 훈련과정 인정심사 신청 전일까지)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이수 및 훈련실시신고 전일까지 HRD 담당자 양성교육 이수

▢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(토, 일, 공휴일 제외) 훈련실시

※ 재학생 유형은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해당없음

▢ 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에 따른 학습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내 유지(미성년자는 35시간)

※ 근로기준법 제53조(연장근로의 제한)에 따라 연장근로에 합의한 경우는 가능

▢ 학습근로자 훈련종료 후 일반근로자 전환시 기존 일반근로자와 호봉·직급 등 최소 동등 유지

20 년 월 일

기업명 및 대표자 (인)

[서식 8]

확 약 서

우리 ○○○○○○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(이하 도제학교)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시 추가 고숙련일학습병행(이하 P-TECH)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며, 아래와 같이 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.

- 아 래 -

1. P-TECH

학습근로자명	도제훈련과정	P-TECH 훈련과정	P-TECH 훈련실시예정일

2. 도제학교

도제훈련과정	도제학교 훈련실시예정일	학습근로자 수(예정)

2020 년 월 일

참여기업 대표 성명 : (직인)

도제학교 사업책임자 성명 : (서명)

인하공업전문대학 사업책임자 성명 : (서명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[서식 9]

2021학년도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

순번	성명	생년월일	출신고교	졸업년도	소속부서	담당업무	연락처
1							
- 추천사유 :							
2							
- 추천사유 :							
3							
- 추천사유 :							
4							
- 추천사유 :							
5							
- 추천사유 :							

위 사람을 귀 대학 _____과 입학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○○○○○○(주) 대표 : (직인)

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귀하

[서식 10]

계약학과 설치 · 운영 계약서

인하공업전문대학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과 _____(이하 “산업체” 라 한다)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대학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계약은 “산업체”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약학과를 설치 ·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“산업체”와 대학이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(계약학과명칭, 학위과정, 학생 수, 설치운영 기간, 교육장소)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, 학위과정, 모집인원, 설치 · 운영 기간, 교육장소는 아래의 표와 같이 한다.

계약학과명	학위과정	모집인원	설치운영 기간	교육장소
	전문학사	명	2021.3.1. ~ 2023.2.28. (2년)	산업체 및 대학

※학과 및 모집인원 : 스마트기계설계과 35명, 첨단스마트자동차과 30명

제 3 조(학생 선발 · 입학) ① “계약학과”의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“대학”의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른다.
② “계약학과”의 지원대상자는 “산업체”에서 일괄 추천한다.

제 4 조(교육과정의 편성 · 운영)
① “계약학과”의 교육과정은 “대학”의 학칙에 따른다.
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“산업체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5 조(수업형태) 수업은 출석수업(Off-JT), 현장훈련(OJT) 등으로 한다.

제 6 조(학기 및 수업일수 등) 학기 및 수업일수는 “대학”의 학칙에 따라 운영한다.

제 7 조(학적변동) 계약학과 학생의 휴 · 복학 등의 학적변동은 “대학”의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른다.

제 8 조(경비부담)
① “계약학과”의 운영에 필요한 등록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② 단, “계약학과” 과정 이후 추가 학기에 대한 경비는 “대학”과 “산업체”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 9 조(입학취소 및 제적처리)
①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“산업체”에서 퇴직한 경우 “대학”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② “대학”이 “산업체”로부터 퇴직자 명단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학허가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
다만 “산업체”의 도산,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10 조(인력교류) “산업체”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“대학”의 규정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 하여 계약학과 교수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 11 조(산업체 시설사용) “대학”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“산업체”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 12 조(관련 규정 적용) ① “계약학과”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“대학”의 학칙 및 계약학과 설립· 운영 관한 규정,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, 일학습병행 운영 지침 및 규칙에 따른다.
②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“산업체”와 “대학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13 조(효력발생) 이 협약은 “계약학과”가 설치되고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“산업체”와 “대학”은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,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 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대학명 : 인 하 공 업 전 문 대 학	회사명 :
총 장 : 진 인 주 (직인)	대 표 : (직인)

[서식 11] -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용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· 제3자 제공 동의서

■ 주민등록번호 수집 · 이용 사항 고지

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목적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입학업무처리, 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자격확인	주민등록번호	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73조 제1항2호 「교육기본법」 제16조제2항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73조 제2항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항 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추가전화번호, 이메일, 주민등록번호, 재직회사명, 경력사항	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자격확인	10년
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

항 목	제공받는 자	수집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추가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재직회사명, 경력사항	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인력공단, P-TECH 허브사업단	-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자격확인 - 직업능력개발 정보망 운영	5년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학원서 제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(필수)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	□예	□아니요
(필수)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	□예	□아니요

본인은 귀 대학의 고숙련일학습병행(P-TECH) 사업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.

20 년 월 일

지원자 서명 또는 인

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귀하